

환 경 부

다시 대한민국! 서울 국민나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코드 신설 알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3.12.28)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코 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그 밖의 폐섬유(51-27-99)"로 배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제2호 51-27-03란 다음에 51-27-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환 경 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지원습환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원주지방환경정장(지원순환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물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전라북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원순환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자원순환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 질병관리청장(감염병정책총괄과장), 질병관리청장(의료감염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정책과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수의사회

사무관승진예

전결 2024. 1. 5.

정자 **김명연** 

이승현

과장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61

(2024. 1. 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 / http://me.go.kr

리과

전화번호 044-201-7366

팩스번호 044-201-7376

/ sun504@me.go.kr

/ 비공개(5)